

학생상담센터 운영내규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 및 위치) 본 센터는 서울신학대학교 부속 학생상담센터(이하 “본 센터”라 한다)라 하며, 서울신학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내에 둔다. <개정 2017.11.21.>

제2조(목적) 본 센터는 본 대학교 학생들의 학생생활에 관한 연구와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지도를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업무 및 분담)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. <개정 2017.11.21.>

- ① 다음 각 호의 상담업무를 수행한다.
 1. 심리검사 및 해석
 2. 개인상담 및 심리치료
 3. 집단상담
- ② 다음 각 호의 연구업무를 수행한다.
 1. 학생실태 및 생활지도에 관한 조사연구
 2. 심리, 상담에 관한 조사연구
- ③ 다음 각 호의 교육업무를 수행한다.
 1. 각종 교내 세미나
 2. 상담원 교육
 3. 정신건강 심포지움
- ④ 다음 각 호의 교내 기관 업무협조를 수행한다.
 1. 교내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세미나 개최
 2.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
 3. 기타 교내 상담관련 프로그램 및 상담 지원

제2장 조직

제4조(구성) 본 센터에는 소장, 실습전담교수를 두며, 선임연구원, 전임연구원, 객원상담원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7.11.21.>

제4조2(소장) 학생상담센터의 소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소장은 상담센터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상담센터 연구원들을 지휘·감독한다.

[본조신설 2017.11.21.]

제4조3(실습전담교수) 본 센터에는 실습전담교수를 둘 수 있으며, 자격요건은 상담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이상이며,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총장이 위촉한다. 실습전담교수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.

1. 상담사 임상 교육 및 훈련
2.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
3. 학생상담과 지도
4. 양성평등 관련 교육

[본조신설 2017.11.21.]

제4조4(선임/연구원) ①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상담심리사 2급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.

② 선임연구원은 상담 및 심리검사활동과 상담센터의 연구계획에 참여하며 연구활동을 수행한다.

③ 연구원은 선임연구원을 보조하여 상담업무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며, 상담센터의 운영업무를 수행한다.

[본조신설 2017.11.21.]

제4조의5(객원상담원) 본 센터에는 객원상담원을 둘 수 있으며, 자격요건은 상담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이며, 상담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센터장이 위촉한다.

[본조신설 2017.11.21.]

제4조의6(학생모니터링단) ① 상담센터의 사업 운영과정 및 성과에 대한 학생 의견 수렴 및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학생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.

② 학생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학생지원프로그램의 개선에 대한 학생 의견 수렴 및 요구사항 도출
2.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학생 의견 수렴 및 요구사항 도출
3. 그 밖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학생 의견 수렴 및 요구사항 도출

③ 상담센터는 학생모니터링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차기년도 사업에 반영한다.

④ 학생모니터링단은 학생 자치활동으로 학기 단위로 운영하며, 상담센터에서 총괄하고 관리한다.

[본조신설 2017.11.21.]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5조(운영위원회) ①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운영, 정책, 사업계획, 예산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, 결의한다.

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.

③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7.11.21.]

제5조2(운영위원) ① 운영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수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운영위원은 센터장의 자문에 응하며 회의에 참석한다.

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7.11.21.]

제6조(운영위원회 임무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의 기본운영 계획
2. 학생 상담과 지도의 계획
3. 센터 운영상의 중요사항

제7조(재정) 본 센터의 재정은 본 대학교 연구비, 외부연구비 및 기타 기탁금 등으로 충당한다. 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준한다.

제8조(센터의 지원 및 관리) 센터의 지원 및 관리는 본 대학교 연구비 지원 및 관리 규정에 따른다.

제9조 삭제 <2017.11.21.>

제10조(규정의 준용)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타사항은 본 대학교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1조(세칙설정)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별도세칙을 설정할 수 있다.

제12조(규정의 개폐) 이 규정은 학생상담센터 운영위원회 결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 <개정 2017.11.21.>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5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(센터 명칭변경(구 학생생활연구소)에 따른 전면 개정)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